

의안번호	제91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회)

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출자	박미옥 의원 외 8인
제출연월일	2025년 9월 8일

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박미옥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91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9월 8일
발의자 : 박미옥 의원 외 8인

1. 제안이유

- 대다수의 농어촌이 저출생, 고령화와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
-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관련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충청광역연합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라. 청년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- 마.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- 바.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: 불임

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어업·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농업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, “어업”이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- “청년농어업인”이란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광역연합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충청광역연합장(이하 “연합장”이라 한다)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연합장은 제3조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

2.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
3.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
4. 관계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5.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
2.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
3. 선도 농어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
4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·행사 및 운영 지원
5.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
6.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)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농어업인은 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- 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교육 등) 연합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·정보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연합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재원의 확보) 연합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국가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「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4항제1호*

*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○ 사 유

조례 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7천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, 「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함

○ 작성자

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박미옥